

이사회 규정

(2023. 03. 29 개정)

HYUNDAI
corporation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23 조의 2 제 2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- ② 정관 제 23 조의 5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순서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다.

제 6 조 (삭 제)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2 개월에 1 회 이상 본사에서 개최한다.
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단, 이사회 의결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의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부의사항)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 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4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

- (5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8) 신주의 발행
- (9) 주식의 소각
- (10) 사채의 모집 (단, 법 469 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한 사채 제외)
- (11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2) 전환사채의 발행
- (13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4)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5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
- (16)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- ②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- (1) 사업계획
 - (2)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, 채무의 보증,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(3)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
 - (4) 해외증권의 발행
 - (5)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
 - (6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
 - (7)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12 조의 2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동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
제 14 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2 (자문위원회)

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3 (경영진)

- ① 정관 제 23 조의 9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-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경영진은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로 구분하며 회장, 부회장,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의 직을 겸직할 수 있다.
-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.
-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며, 연임될 수 있다.
- ⑥ 경영진의 급여,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 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,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.

제 15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,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.
 - 1. 이사 또는 주요주주
 - 2.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- 3. 제 1 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- 4.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
 - 5.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제 4 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
-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 - 1.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
 - 2.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
-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책임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.

- 1.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정책의 승인
- 2.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구조에 대한 승인
- 3. 회사내 재무보고 및 자산보호와 관련된 제반위험에 대한 이해
- 4.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지에 대한 확인
- 5.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제 18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이사회 지원)

- 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간사 및 지원 팀을 둘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부 칙 (1996. 03. 21)

본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8. 04. 24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9. 05. 14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 04. 28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05. 25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04. 19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04. 24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08. 26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04. 29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03. 7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02. 29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제 6 조, 제 9 조, 제 12 조 제 2 항 제 7 호, 제 12 조의 2 및 제 18 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, 제 8 조, 제 10 조, 제 12 조 제 1 항 제 10 호 및 제 16 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 03. 29)

본 이사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